삼정 KPING

K-SOX Newsletter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T는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TFT는 K-SOX^(*) Newsletter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 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SOX: Korea Sarbanes-Oxley Act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한다.

May 31, 2019

In this Issue

I. Law & Regulation

II. Articles

Ⅲ. FAQ

IV. News

V. Events

Key Contacts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19.4.1)에 따른 내부회계관리 제도 관련 조치 강화

- 개정 개요
 -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이하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음
 - 관련 보도자료 다운로드
 - 외감규정 시행세칙('19.4.1) 원문 다운로드
 - 조치양정기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내용 신설
 - 보도자료상 주요 개정내용으로 소개되지는 않은 내용으로, 위법동기(고의 여부)와 위법행위 중요도 판단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내용이 신설되었음
 - ▷ (위법동기 중요도) 형식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명백히 거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에 중과실로 판단될 수 있음(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Ⅲ.2)
 - □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보는데, △"직무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회계정보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 모두 해당되면 중과실로 판단 가능
 - □ 이때 "직무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 하나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기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가 있음
 - ▷ (위법행위 중요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조치가 가중될 수 있음(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
 - □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조치 가중 사유 중 하나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가 포함됨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19.5.23]

• 개요

-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발행 후 회사의 재무제표(주석사항 포함) 수정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때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여 재발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최근 3 년간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보이용자들에게 필요사항을 안내함
- 관련 보도자료 다운로드

• 정정횟수 현황

- 최근 3년간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증가율은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의 증가율을 상회함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외부감사 대상회사	27,114 사	29,263 사	31,473 사
		(△7.9%)	(△7.6%)
외부감사 대상회사	969 회	1,230 회	1,533 회
감사보고서 정정 현황		(△26.9%)	(△24.6%)

- 최근 3 년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정정횟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증가율은 상장법인 수의 중가율을 상회함

• **정정공시 기간**(정정공시일-최초제출일) **현황**

- 최초 공시 이후 1개월 이내 정정이 다수(44.0%)를 차지하고 있으나, 2년 이상 경과되어 정정한 경우도 상당수(10.7%) 포함함

• 시사점

- 기업은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
- 기업은 회계처리 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할 필요
- 감사인 변경 후 중요한 전기오류사항 발견 시, 감사인은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Back to top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2018 Internal Controls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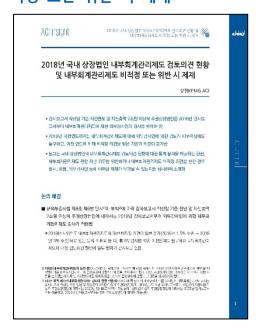


Global KPMG는 재무보고 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설문의 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 기업은 통제의 합리화와 테스트 비용 절감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IT, Data 등을 활용한 통제 자동화 영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반수의 기업이 재무보고 내부통제 문서화 및 테스트에 IT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Global KPMG

2018년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현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또는 위반 시 제재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8 사업연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에 비해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본고는 국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을 제공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 의무를 위반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의 제재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출처] 삼정 KPMG ACI, 『감사위원회 저널』

Back to top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내부회계관리자 임면 절차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19.4.12)

Q. A사가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상근이사 중에서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도록되어 있다.

이때,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과 관련하여 A사는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나 증빙을 갖춰야 하는가? 예를 들어, 인사발령 공고와 같이 회사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는가?

A. 질의한 A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만 정해져 있고, '임면절차'는 따로 없으므로 특별한 제약조건은 없으며, 내부적으로 임명에 대한 문서 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를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정해야 하는 바, A사의 '임면절차'에 대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충분한지에 대 해서는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 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 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 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 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 요건 및 임면절차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날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19.3.4)

- Q.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와 내부화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에 각 각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가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 자필 서명이 아닌 도장을 찍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
- A.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서명날인은 동보고서의 취지상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요하는 것으로, 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중 어느 방법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명, 기명, 기명날인의 일반적 의미는 아래와 같음

'서명'은 문서 등에 스스로 자기의 성명을 쓰는 것을 말함. 이것을 '자서'라고도 하며, 법률상 '서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서명'은 '기명날인'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기명'은 스스로 성명을 쓰지 아니하고 타인이 써도 좋고, 고무인·타이프 등을 사용하여도 좋음. 이 점에서 스스로 성명을 쓰는 '서명'과 다름. 상법과 어음·수표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법에서의 증권적 채권에 관하여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음(민510). '기명날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함.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이 있음.

'서명날인'은 자서인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날인'하는 것을 뜻함

민법 제510조(배서의 방식)

-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 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Back to top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국내 동향

- "중견기업도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비해야" [이데일리]
-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14 일 개최 [조선비즈]
- 코스닥 '내부회계관리' 부담 완화...'무더기 상폐' 막는다 [머니투데이]
- 거래소-한공회,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역량 제고 MOU 체결 [뉴스토마토]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1 년간 운영 [서울경제]
- 증선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6곳에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 내부통제 잘하는 증권사는...미래 · NH · 유안타 순 [헤럴드 경제]

해외 동향

- SEC Moves to Ease Audits for Smaller Companies [WSJ]
- Internal Audit's Changing Role in a Changing Technological Environment [CCI]

Back to top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사)감사위원회 포럼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

- **일 시:** 2019 년 6월 27일(목) 09:00~12:20
- 장소: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 내용 (변동 가능)

Time	Contents	Speaker
9:00 ~ 9:30 [30 분]	참가자 등록	
9:30 ~ 9:40 [10 분]	축사	금융위원회
09:40 ~ 10:00 [15 분]	기조 강의	최중경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10:10 ~ 11:10 [60 분]	주제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	황근식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1:20 ~ 12:20 [60 분]	주제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과제와 대응방안	정현 파트너 (안진회계법인)
12:20~	오찬	

Back to top

Key Contacts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K-SOX TFT Leader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전용기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한상현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김민규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김유경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박상옥 상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이성노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이종우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전원표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 헌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Back to top

Privacy | Legal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9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